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칙

제정 : 2007. 7. 18
개정 : 2008. 5. 13
개정 : 2013. 5. 15
개정 : 2015. 5. 20
개정 : 2016. 4. 12
개정 : 2017. 4. 19
개정 : 2021. 4. 21
개정 : 2023. 5.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2조, 제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그 명칭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이회”)라 하며, 영문은 Daegu Chapter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라 하고 약칭 KIRA DAEGU 라 한다.

제2조(목적) 이회는 협회 정관 제2조와 이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회의 주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구성 및 조직) ① 이회는 협회 정관 제7조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제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회원을 둘 수 있다.

② 이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이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
2.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3. 국제교류 및 건축정보 교환
4. 국토이용계획 및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5.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감정
6.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각종 간행물 발간 사업
8. 협회가 위임·위탁한 업무와 이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제6조(제규정) ① 이회의 회칙에 정하는 사항 외에 조직과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협회 정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우선 시

행하고 이 회의 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이 회 회칙 또는 제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정관 및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① 정회원은 협회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8조에 의한 회원으로서 이 회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② 이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회원 외에 정관 제7조 제2항에 의한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 및 정관 제7조 제3항에 의한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입회) ①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회를 통하여 협회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된다.

② 협회에 입회한 회원 중 대구광역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이 회의 회원이 된다.

③ 정회원 외에 제7조제2항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및 협회 정관 제50조에 따라 제명된 후 재입회 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회원 등 입회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원신고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와 제4호 중 표결에 관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1. 이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이 회의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 협회와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3. 저작권 보호 및 실적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를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4. 이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5. 이 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사업무 관련 증명발급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제1항 외에 사항은 협회 정관 제9조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권리중 이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5년 이상 협회 정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3호는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한다.

1. 협회 정관 및 윤리규정과 이 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협회 및 이 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 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다만, 협회 정관 제12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대 회원이 이 회를 통해 업무를 수임코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협회 및 이 회의 행사 및 활동에 참여 할 의무
 5. 협회 및 이 회의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 할 의무
 6. 회원 인증절차를 이행 할 의무
 7. 협회 및 이 회의 총회 의결사항 준수
- ② 회원은 제1항의 의무사항 외에도 대내외적으로 협회 및 이 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 및 이 회의 직위 또는 명칭 사용
 2. 협회 및 이 회의 지시사항이나 정책방향 및 결정사항 등의 신의 성실히 이행
 3. 활동 사항 결과보고

제11조(자격의 상실) 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회의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사 망
 2. 타 건축사회 진출
 3. 제 명
 4. 퇴 회
 5. 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른 자격취소
 6. 기타 회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의 취소
- ② 제1항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처분 취소 확정일로부터 정회원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제12조(퇴회) 이 회를 퇴회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협회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이 회를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이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이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의 불신임 안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의

장을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총회의 구분, 소집 및 보고)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협회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2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결과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어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다만, 감사 1인이 유고시 1인이 소집 할 수 있다.

5. 정회원 4분의1 이상이 명백한 사유와 증거가 명시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연명으로 제출하고 서면으로 임원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이행하고, 이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최소 7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문서(FAX, 전자문서 등을 포함 한다)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총회 개최 관련 사항을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회비의 결정

4.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5.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6. 정관 제14조에 의한 협회 대의원의 선출

7.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과 출석 정회원 3분의 1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채택된 의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제16조(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회칙 개정 및 회장 불신임은 출석정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④ 천재지변, 전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의 총회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서면결의로 행사하게 하거나, 이 회의 임원,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정회원의 의결권 위임범위는 회칙 제14조 제5항에 따라 정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한 부의안건에 한하며, 회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중 임원의 불신임은 위임 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다.
- ⑥ 정회원은 제4항에 의한 서면결의 또는 위임을 하는 경우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 ①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정회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얻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임원 및 대의원

제18조(임원) 이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내(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3. 이 사 : 15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제19조(임원의 직무 및 성실의무) ①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감사는 이회의 업무와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⑤ 임원은 이회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①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③ 협회 대의원은 총회 전일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2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며, 그 단수가 10인을 초과할 때는 1인을 더 선출한다.
- ④ 제3항의 대의원 선출시 협회 직전 임원 및 이회의 직전회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기타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이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 회장 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대의원의 재임기간은 제외한다.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정기총회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직무를 개시한다.
- ③ 보선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 및 대의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회장은 불신임 요구가 접수된 익일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그 밖의 임원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22조(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보고) 이 회의는 회장 및 대의원을 선출한 경우나 대의원을 보선한 경우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④ 제3항 제2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 3. 총회의 위임사항
- 4.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5. 위원회의 설치
- 6. 협회에 대한 주요 건의 사항
- 7. 이 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8. 협회 정관 제14조에 의한 협회 대의원 보선
9. 회원의 징계 및 포상자의 결정
10. 기타 회장이 필요하여 부의한 사항

제26조(성립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회의록) ①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및 협의회

제28조(운영) ① 이회는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자문위원회
2. 윤리위원회
3. 정책위원회
4. 기획위원회
5. 법제위원회
6. 국제교류위원회
7. 청년위원회
8. 여성위원회
9. 복지위원회
10. 교육위원회

②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이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 및 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회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문위원회 위원은 역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 정책 및 예산 등에 관하여 회장에게 자문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협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사 무 기 구

제31조(사무기구) ①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기구 및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담당업무 및 임용 등은 협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정,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이 회의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 운영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급여) 상근부회장 및 사무국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33조(재정) ①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 회비
 2. 운영회비
 3. 협회의 교부금
 4. 특별회비
 5. 사업 수익금
 - 가. 간행물 출판에 따른 판매수익금 및 기타 사업 수익금
 - 나. 광고료 등 수익금
 6. 감정 및 제 증명 수수료
 7. 제1호 및 제2호 외에 총회에서 정한 회비
 8. 기타 수익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등의 수납방법 및 시기 등은 건축사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 또는 인가 받은 업무의 제증명 수수료

료는 협회 기준에 따른다.

③ 이회는 협회 정관 제36조 규정에 의한 협회의 수입금을 매월 말일까지 수납·마감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 이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때 총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35조(회계연도) ① 이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당해년도 중에 확정된 수입금의 지출은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시작 후 총회 시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집행예산에 준한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제36조(결산서 제출) 회장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의비용 등) 이회의 임원, 위원, 회원 및 기타 외부인사가 회의참석 또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포상 및 징계

제38조(포상) 이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건축계 및 이회 발전과 대외적으로 이회를 빛낸 회원
2. 건축계 및 이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단체

제39조(징계) ① 이회 정회원이 협회 정관 또는 이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징계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고
2. 회원 권리정지
3. 제명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경과한 후 이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재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윤리위원회 의결방법 및 절차는 협회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0조(회비미납 징계) ① 회장은 이 회의 정회원이 제33조 제1항의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 경고
2. 12개월 이상 : 회원 권리정지
3. 24개월 이상 : 회원 권리정지 및 미납회비의 20%이내 가산금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정회원이 회비(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제41조(징계처분결과 보고) 이 회의 회장은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회원을 징계처분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 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7.7.18 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로부터 승인된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회칙 시행후 최초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건축사회 회장은 제2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기존 규정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 정관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회의 회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5.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건축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회칙 제21조(임원의 임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대 회장에 한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

부 칙 (2013.5.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로부터 승인된 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규정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 정관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회의 회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5. 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건축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회칙 제21조(임원의 임기) 제1항은 2015년3월 중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 대의원에 대하여 협회 승인 시까지 이 회칙을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건축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건축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규정들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 정관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회의 회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5. 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회 이사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